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내용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자구 수정 (도 심의회 → 심의회)
- 중복된 조문 수정(제7조의2제3호, 동조제4호)

첨 부

-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규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5조, 제6조중 “도 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라 한다

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계획의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목적) ①도심의회는 회장 1명과 16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 다만, 시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)·군건설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·군수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.</p> <p>② - ④ (생략)</p>	<p>제2조(목적)①심의회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회의 및 소집) 도심의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회의 및 소집)심의회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6조(의사정족수) 도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</p>	<p>제6조(의사정족수)심의회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7조의2(지방조사연구단) ①-②(생략)</p> <p>③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단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④-⑥(생략)</p>	<p>제7조의2(지방조사연구단) ①-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계획의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둔다.</p> <p>④-⑥(현행과 같음)</p>